

프랑스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 및 정책

I. 서론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정의
2. 법제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과 감독 기관
4. 정책

III. 자영업자 보호 및 지원

1. 형태에 따른 분류
2. 자영업 지원 및 보호 제도
3. 현황

IV. 결론

강 흥 진

(해외입법조사위원, SAINT Consulting 대표)

[특집]

2012년도 특집호는 향후 국가적 의제의 중심이 될 '경제민주화'에 관한 세계 각국의 법제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I. 서론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폐해로 발생한 금융 위기, 장기간의 불황 및 대량 해고 등의 사태에 직면한 프랑스 학계 및 경제계 전문가들은 경제 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국제, 유럽 및 국내법 차원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 연대 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 시행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사회연대경제의 실현에 근본이 되는 규범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국제화된 시장경제의 민주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비시장경제에 새로운 합법성 부여, 비통화경제 고려 및 연대경제 인정”¹⁾을 주 내용으로 한다.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프랑스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은 신시장 창설을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 발전만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신자유주의적 모델과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빈곤층의 관리에만 제한을 두는 국가관리주의 모델이 양립한다.²⁾ 따라서 프랑스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 및 정책은 전반적인 경제규범의 형태를 지니며, 추구하는 정책 및 법제는 시장 경쟁 또는 국가 규제 분배를 근거로 하는 경제 규제를 넘어서는 경제 규제 내용을 포함한다.³⁾

상기 개념의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해 프랑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자영업자 지원 및 보호, 청년층 취업 촉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및 법제를 시행한다. 본 글은 프랑스 경제민주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기 주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정 의

21세기에 진입하면서 프랑스 대기업도 주주에 대한 기업 책임 외에도 사회 전반에 대한 기업 책임이 존재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갖추기 시작했

-
- 1) ROUSTANG, G., LAVILLE, J.-L., EME, B., MOTHÉ, D., PERRET, B., Vers un nouveau contrat social, Sociologie économique, Paris, Desclée de Brouwer, p. 103.
 - 2) Rapport du collège des chercheuses et chercheurs, Rapport final présenté aux Premiers ministres, Coopération France-Québec en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pp. 16-17.
 - 3) Laurent Fraisse “ÉCONOMIE SOLIDAIRE ET DÉMOCRATISATION DE L'ÉCONOMIE”, HERMÈS 36, 2003, p. 143.

다. 프랑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개념은 1단계인 윤리적 책임, 2단계인 공리적 책임, 그리고 3단계로서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기업의 환경, 사회 및 경제 기여가 포함된 경영 활동 평가라는 3가지 단계를 거쳐 진화되었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는 NGO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프랑스 기업들도 프랑스 및 외국 시장에서의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환경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맞추어서 2008년 제정된 그르넬 환경법률은 프랑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 환경 및 경제적 관심사를 기업 활동 및 이해 관련 파트너와의 상호 관계 내에 통합하는 개념을 위한 기업의 기여”라고 정의했으며,⁴⁾ 2010년 프랑스 환경, 에너지 및 지속 가능 개발부는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sociale) 책임이란 포괄적인 용어보다 구체적인 개념의 기업 경영 활동의 파트너인 고객, NGO,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및 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sociétale) 책임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회, 환경 및 경제분야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볼 때, 프랑스에서 정의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환경, 사회 및 경제적 발전의 3가지 축을 통합한 지속적인 발전에 기업이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⁵⁾

프랑스는 국내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가 전략 시행에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우선적인 수단으로 인식해 다양한 국내법을 제정했으며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책 우선권을 부여했다. 구체적인 예로 2009년 8월 3일 그르넬 1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 계획을 규정한다(제53조).

- ① 2001년 5월 15일 신경제 규제법 제116조에 기초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의 필연적 조건으로서 기업 활동 관련 파트너(주주, 근로자, NGO, 근접 거주민 등)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연례보고서에 기업의 사회 및 환경 기여 정보 포함
- ② 지속적 발전에 관한 근로자 대표 기관의 역할의 구체화 작업에 기업 활동 파트너(근로자 대표 기구) 참여
- ③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업을 유치한 지방 협의 단체에 대한 새로운 지속 발전 내용 통보

4) Grenelle de l'Environnement, Ministère de l'Écologie, de l'Éner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Rapport final, 21 mars 2008, p. 3.

5)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Responsabilite-societale-des.html>.

- ④ 기업의 사회 및 환경 기여에 관한 등급 라벨 창설에 대한 정부 지원
- ⑤ 환경 관리 시스템 개발과 중소기업 및 공단 지역에 대한 기업의 사회 및 환경 등급 시스템의 인증에 대한 정부 지원
- ⑥ 사회 책임 투자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
- ⑦ 유럽 연합 차원의 사회 및 환경 지표에 관한 공동 좌표 설정 촉진에 참여

또한, 2010년 7월 12일자 그르넬 2 법률은 “다양한 자본의 투자 회사와 자산 관리 회사는 고객에게 제출되는 연례보고서와 투자 활동에 관한 정보 자료에 사회, 환경 및 양질의 투자 관리에 관한 투자 기준 정책 방식을 기재한다.”고 규정한다(제224조).

2. 법 제

2001년 5월 15일 제정된 신경제규제에 관한 법률 n°2001-420(Loi n°2001-420 du 15 mai 2001 relative aux nouvelles régulations économiques: NRE 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했다. 2003년 1월 13일 요하네스버그 행동 계획에 따라 지속 발전을 위한 국가 위원회(Conseil National du Développement Durable - CNDD)가 설립되어 “지속 발전 국가 전략”을 수립했다. 2003년 상기 위원회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서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 책임을 발전시킬 것을 권고했다. 2007년 9월과 10월에 국가 및 민간 분야(지방 자치 단체, NGO, 기업가 및 근로자) 대표들이 참가한 정책회의인 그르넬 환경(Grenelle Environnement) 회의는 장기적인 지속 발전에 관한 정책 토론을 거쳐 지속적 발전을 위한 268개의 행동 강령을 채택했다. 2008년 운영 위원회는 “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Entreprises et RSE)” 보고서를 발간해 2007년 그르넬 환경에서 채택한 행동 강령의 이행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포함된 계획을 제안했다.

상기 보고서에 기초해 2009년 8월 3일자 그르넬 환경 시행에 관한 법률 n°2009-967 (LOI n°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Grenelle 1 법률)과 2010년 7월 12일자 환경에 관한 국가 참여에 관한 법률 n°2010-788(LOI n°2010-788 du 12 juillet 2010 portant engagement national pour l'environnement: Grenelle 2 법률)이 제정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프랑스 정책의 입법적 바탕을 구성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타 프랑스 법은 공공 조달, 기업 활동 투명성 및 사회 책임 투자 분야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다.

1) 공공조달

공공조달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2004/18/CE와 2004/17/CE를 국내법에 반영한 2006년 8월 1일자 법령 n°2006-975(Décret n°2006-975 du 1er août 2006 transposant les directives européennes “marchés publics” 2004/17/CE et 2004/18/CE)에 의해 2006년 개정된 공공 조달법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목표를 고려한 공공 조달(제5조)과 공공 조달 품목 구매 결정에서 환경 라벨에 기초한 환경 기준을 포함할 것을 규정한다(제6-VII조).

상기 법에 준거해 프랑스 정부는 2007년 3월 지속적인 공공 조달 구매 활동에 관한 국립 계획(Plan national d'action pour des achats publics durables - PNAAPD)을 설정해 모든 공공 조달 구매자에게 사회적 및 환경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구했다.

2008년 4월 9일자 사회적 책임 공공 구매 정책 발전에 관한 각료 회의 발표문과 2008년 12월 3일자 공공 서비스와 공공 기관의 지속적 발전에 관련된 국가의 모범에 관한 총리 지침은 2012년도까지 정부 구매의 10%를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의 제품으로 충당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2) 기업활동 투명성

2001년 5월 15일자 신경제규제에 관한 법률은 상법의 제L225-102-1조를 개정해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경영 보고서에 해당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기여에 대한 내용의 삽입 의무를 규정한다(제116조). 상기법에 의해 개정된 상법 제L225-102-1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보고 의무를 규정한다. 상기 규정의 적용 대상은 ① 주식 시장 상장 기업, ② 법령이 규정하는 결산, 매출액 및 고용 근로자 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며, 상기 기업은 경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및 환경 결과에 대한 처리 방식과 지속적 발전 촉진을 위한 사회적 약속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적인 의무와 관련해 기재되는 사회적 및 환경 정보는 국가 평의회 법령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의 검사 대상이 된다. 상기 검사는 주주 총회에 제출되는 의견 또는 이사회 보고서에 기재된다.

상기 규정은 주주와 경영 활동에 관련된 근로자 및 기타 파트너에 대한 기업의 경영 투명성 보장을 통해 기업의 환경 및 사회 책임 이행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3년 8월 1일자 금융 안전에 관한 법률 n°2003-706(Loi n°2003-706 du 1 août 2003 de sécurité financière)은 국제적인 경영 활동을 행하는 상장 기업에게 다양한 형태의 재정 위기에 대한 대비책, 감독 절차 및 감독 위원회 조직에 관한 특별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해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기업 내의 모든 관리자에게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다(제117조).

또한, 상법은 기업의 연례보고서에 기업 경영 활동 및 환경에 관련된 환경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와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한 위기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며(제225-100조), 상장 기업은 경영 활동 중 발생한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225-102조 4항).

2009년 8월 3일자 그르넬 1 법률은 상장 기업 및 기타 기업과 상기 기업의 자회사의 사회 및 환경에 대한 기업 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며(제53조), 제품 및 포장에 소비자를 위한 환경 정보로서 제품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과 판매장소, 제품 유통 경로 및 제품 생산이 야기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보 게재 의무를 규정한다(제54조). 상기 규정에 준거해 프랑스는 국가가 주도하는 토목 및 주택 건설 분야에서의 지속적 발전과 에너지 관리 개선을 위한 국민 홍보에 관한 다년 정책과 지속적인 소비에 관한 홍보 정책을 이행한다.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징세액으로부터 환경 보호, 즉 기후 또는 바이오 에코 시스템에 최소한의 영향을 끼치는 제품의 가격 인하에 대한 보조금과 부가 가치세 감면을 지원한다.

2010년 7월 12일자 그르넬 2 법률은 2011년 1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기업의 사회 기여 활동 촉진을 위한 상기 법 적용에 관한 정부 보고서의 의회 제출 의무를 규정한다(제225조). 상기 규정에 준거해 프랑스 정부는 대기업을 연례 경영 보고서에 재정 분야를 제외한 기업의 사회 및 환경 기여 활동에 관한 정보 포함에 관한 법 적용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2011년 1월 1일자 바람직한 기업 경영 관습을 위한 지시 BP X 30-323를 통해 대량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위생, 주택, 공공 교통 서비스, 전화 등 사회 및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제품의 유통 경로 추적을 위해 제품의 생산 조건과 생산지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을 위한 조건을 제안한다.⁶⁾

상기 정책에 대해 특정 분야의 프랑스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성, 사회 및 환경 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를 공유하는 기업 간 협력 방식을 선택했다. 이

6) <http://www.afnor.org/content/view/full/12036>.

미 2005년 릴시의 야마나(Yamana) 시민단체에 의해 주창된 시민 섬유 운동(Fibres cityoynnes)⁷⁾은 섬유 및 의상 분야의 9개 기업이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 및 환경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시민 섬유 운동은 소비자, 생산 기업 및 제품 유통 기업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의무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참가 기업은 사회 책임 활동에 대해 공권력, 경제 및 민간 기업 대표로 구성된 감독 위원회의 자문과 승인을 받으며, 공공 기관, 기업 및 개인으로 구성된 섬유 제품 소비자 단체와의 협의에 참가한다.

3) 사회적 책임 투자

2001년 7월 17일자 사회, 교육 및 문화 질서에 관한 다양한 규범에 관한 법률 n°2001-624(Loi n°2001-624 du 17 juillet 2001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social, éducatif et culturel)의 제2편 퇴직자를 위한 예비 기금의 제6조는 사회, 환경 및 윤리 측면을 고려한 기금 투자 정책 수립을 규정한다. 정책 감독위원회는 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 자산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가장 바람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명시할 것을 집행 이사회에 촉구할 수 있다.

2001년 2월 19일자 급여 예금에 관한 법률 n°2001-152(Loi n°2001-152 du 19 février 2001 sur l'épargne salariale)은 제3편 자의적인 급여 예금 파트너 계획에서 기금의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회, 환경 또는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투자 방식을 규정한다. 규정에 준거해 상기 기금은 연례 투자 보고서에 규정 적용을 명기해야 한다.

2008년 8월 4일자 신경제 규제법률 또한 기업이 관리하는 예금 계좌에 가입한 근로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일환인 기업 연대 투자에 근로자의 기업 예금 일부를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1조).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과 감독기관

프랑스는 2003년 1월 13일 기업의 사회적 촉진을 임무로 하는 민간 대기업에서 선출된 대표 90명으로 구성된 지속적 발전 국립 위원회(Conseil National du Développement Durable)를 창설했다. 2006년 정부 주도하에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속적 발전 클럽(Club des développement durable des établissements publics et en-

7) <http://www.fibrecitoyenne.org/>.

treprises publiques)”)이 설립되어 현재 교통 서비스, 복권, 박물관, 항구, 병원, 대학, 상공 회의소 등 40개의 공공 기관 및 공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 기관 및 기업은 지속적 발전 정책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규칙적으로 발간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 구축에 참여한다.

2007년 개최된 그르넬 환경 회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NGO, 기업주 및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6개의 다자 간 작업 그룹으로 나누어져 1) 기후 변화 방지 및 에너지 수요 관리, 2) 생물 다양성 보존과 천연 자원 보존, 3) 건강을 존중하는 환경 창설, 4)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 양식 채택, 5) 환경 민주주의 건설의 5가지 주제에 관한 토론을 주재했다. 그르넬 환경 회의는 최종 보고서에서 기후 온난화 방지, 생물 다양성 환경 보호 및 공해 감소에 관한 3가지 우선 정책을 채택했다⁸⁾.

또한, 그르넬 환경 회의 이후 프랑스 정부는 “2009년 ~ 2012년 지속적 발전에 관한 국가 전략”에서 1) 기후 변화 및 대체 에너지, 2) 천연 자원 보존 및 관리, 3) 공중 건강, 예방 및 위기 관리, 4) 세계 빈곤과 지속적 발전 저해 국제 요소, 5) 교육 및 직업 훈련, 6) 연구 및 개발, 7) 사회 참여, 인구 및 이민, 8) 통치, 9)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 10) 지속적인 교통과 이동성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했다. 상기 지속적 발전 전략은 유럽 연합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유럽 전략에 부합해 이행되며, 특히 상기 전략에는 1인당 국내 총생산 증가율, 빈곤 위기율 또는 개발을 위한 공공 지원 분야가 포함된다.

2009년 11월 13일 가족 및 연대부의 정무 차관과 다수의 프랑스 주요 대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서 ‘장애인 채용 헌장’⁹⁾에 서명했다. 상기 헌장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강제적인 규정 준수를 초월하는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을 기업의 최고 경영 정책의 일부로 채택하도록 촉구하면서, 주주에 관한 기업의 책임보다 광범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다.

개발 지원을 임무로 하는 프랑스 개발원(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은 환경 및 사회 위기 관리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며, 환경 및 사회 측면에 관한 정책 지원 개선을 이행한다.¹⁰⁾

프랑스 수출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인 코

8) <http://www.legrenelle-environnement.fr/Presentation-du-Grenelle.html>.

9) <http://www.social-sante.gouv.fr/espaces,770/handicap,775/dossiers,806/insertion-professionnelle-des,1650/la-charte-de-l-insertion,10850.html>.

10) <http://www.afd.fr/home>.

파스(COFACE)¹¹⁾는 고객 기업에게 “공공 지원을 받는 환경과 수출 대출에 관한 OECD 권고”에 준거해 환경 및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기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프랑스는 2008년 9월 15일 외무 및 유럽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담당 대사 직을 신설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협력과 관련 프랑스 경제 및 사회 파트너에 대한 홍보 임무를 담당케 했다.

기타 공공 기관으로 2000년에 설립된 “프랑스 국립 연락 포인트(Point de contact national)”는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OECD의 지침 이행을 임무로 한다. 포인트는 국가, 기업 단체 및 노조 대표로 구성되며 OECD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또한, 2004년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설립된 “평등 차별 방지 고등 기구(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l’Egalité - HALDE)”는 사회적 차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임무 중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불이행에 관한 불만을 접수한 후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권에 해당 조사를 이송할 수 있다.

4. 정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진을 위해 프랑스는 특히 연구 계획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에 관한 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라벨 수립과 인증 정책을 발전시켰다.

1) 중소기업 참여 정책

(1) 산업모델 지원기금

환경과 에너지관리기구(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îtrise de l’Energie - ADEME)¹²⁾는 4년간 4억 유로의 예산으로 2세대 바이오 석유, CO₂ 채취 및 저장, 재생 에너지, 온실 효과 배기 가스를 감소하는 자동차, 에너지 절약 주택, 인공 지능을 갖춘 에너지망, 에너지 저장과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신 에너지 기술을 지원한다.

11) <http://www.coface.com/>.

12) <http://www2.ademe.fr/servlet/getDoc?id=11433&m=3&cid=96>.

(2) 미래 투자

프랑스는 2010년 지속적인 발전과 녹색 기술 개발에 대규모 지원을 공공 대출 형식으로 이행하는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녹색 기술 분야의 연구 단계 또는 산업화 이전의 제품에 대해 30억 유로를 지원한다. 이 중 15억 유로는 재생 에너지 개발 투자, 10억 유로는 지속적인 교통과 도시 계획, 5억 유로는 주택용 난방 개선 분야에 지원된다.¹³⁾

(3) 경쟁력 강화 정책

경쟁력 강화 정책¹⁴⁾은 산업에 종사하는 경제계 및 학계가 주도하는 연구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 노력 확대와 산업 및 연구 종사자 간의 공조 효과 강화를 통한 프랑스 경제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을 통한 프랑스 국내 산업 활동 강화, 국제 경제 전망 강화를 통한 프랑스로의 투자 매력 확대,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한다. 건설, 물자, 위기 관리, 에너지, 환경 관련 기술(수자원, 폐기물 처리, 토지 개선)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15개의 경제 포인트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2005 ~ 2007년간 2,000개에 달하는 환경 기술 분야의 연구 및 개발 계획이 상기 포인트로부터 13억 유로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

(4) 연구개발 계획

2009년부터 2011년도 사이에 프랑스 산업부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연구 개발에 3,000만 유로를 지원했다. 국립연구원(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 ANR)은 2005년부터 기초 연구, 산업 연구 또는 생산 이전 단계 연구 계획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상기 기구는 또한 2009년부터 환경 기술과 지속적인 생산 계획에 대한 지원도 이행한다.¹⁵⁾

(5) 환경 - 산업 전략위원회

프랑스 환경 및 산업부는 2008년 7월 환경 산업 지원책에 관한 환경 기업과의 협의체인 환경 - 산업 전략위원회(Comité Stratégique des Eco-industriels - COSEI)를 창설했다. 2009년 12월 환경 및 산업 담당 장관 회의는 폐기물 처리 산업 육성, 수자원 및 정수, 재생 에너지 생산, 인공 지능을 갖춘 전력망과 에너지 저장 및 미약한 환

13) <http://investissement-avenir.gouvernement.fr/>.

14) <http://competitivite.gouv.fr/>.

15) <http://www.agence-nationale-recherche.fr/>.

경 영향을 소유한 건물에 관한 작업 그룹을 설립했다. 2010년 환경 산업 전략 위원회는 환경 관련 산업위원회(Comité Stratégique des filière Eco-industriels)로 개명되어, 다수의 환경 관련 산업(수자원, 폐기물,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조직, 환경 관련 분야의 산업 활동 발전 과정과 정책 방식 지도 및 해결책 제시, 중기 전략 수립 및 경쟁성 발전을 위한 제안, 결정된 산업 전략에 관한 관련 분야 기업과의 대화 개발 및 유지의 4가지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위원회는 기업, 노조, 환경 전문가 및 연구, 개발 및 교육기관의 대표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또한, 위원회는 2012년 환경 기업 라벨을 창설해 상기 라벨 수여 기업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한다.¹⁶⁾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라벨 및 인증

(1) 근로자예금조합 연합위원회

2001년 2월 19일자 근로자 예금에 관한 법률 n°2001-152(Loi n°2001-152 du 19 février 2001 sur l'épargne salariale)은 근로자예금조합 연합위원회(Comité inter-syndical de l'épargne salariale - CIES)를 설립했다. 상기 위원회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 유도과 근로자 예금을 관리하는 기업의 관리방식 변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 예금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는 노조는 근로자 예금 관리를 감독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 기관(은행, 보험회사, 사회 보장 그룹 등)이 제안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 라벨을 부여한다. 상기 라벨에 준거해 근로자는 라벨 부여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다. 현재 14개의 근로자 예금 기금이 상기 위원회가 부여한 금융 상품에 12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한다.¹⁷⁾

(2) Vigéo 등급 라벨

2002년 예금 및 위탁 기금의 주도하에 설립된 Vigéo 등급 라벨은 금융 상품 및 기업 평가 기구인 Vigéo가 부여한다. 상기 라벨은 기업의 사회 및 환경 기여 지수를 통합한 기업 평가에 기초해 부여된다. Vigéo는 또한 고객 기업의 요구에 기초해 인권, 사회 참여, 기업 경영, 환경, 인사 및 시장 활동의 6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며, 해당 기업은 상기 평가에 의거해 장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¹⁸⁾

16)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Mission-et-organisation-du-Comite.html>.

17) <http://www.ci-es.fr/>.

18) <http://www.vigeo.com/csr-rating-agency/fr/vigeo-rating>.

(3) 직업 평등 라벨

직업 평등 라벨은 사회 연대 및 형평부의 지원을 받아 2005년에 설립되었다. 상기 라벨은 기업, 행정부 및 기타 모든 기관의 남녀 근로자 간의 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 평등 라벨은 직업에서의 남녀 평등 촉진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 및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벨 부여는 프랑스 공업 표준화 협회(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가 발급하는 “AFNOR 인증”에 준거해 부여된다. 라벨은 3년 기간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2011년에 8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48개의 기업이 상기 라벨을 획득했다.¹⁹⁾

(4) 다양성 라벨

다양성 라벨은 2008년 9월 12일 국가의 요구에 의해 인사담당이사 국립협회(As-sociation Nationale des Deirecteurs des Ressources Humaines)에 의해 설립되었다. 다양성 라벨은 2010년 3,000개의 기업이 서명한 반인종 차별 참여와 다양성 촉진 정책을 위한 직업 윤리 헌장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인사 관리에서 발생하는 인종 차별 방지와 기업 문화의 다양성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성 라벨은 프랑스 공업 표준화 협회(AFNOR) 조사에 준거해 관련 행정 부처, 기업 대표 기구, 노조 및 인사 이사 국립 협회가 지정한 전문가로 구성된 라벨 부여 위원회가 결정한다. 라벨은 3년 기간으로 발급되며 18개월마다 중간 검사를 받는다. 라벨 부여 조건은 법이 규정한 인종 차별에 대한 해결 노력, 인종 차별 예방과 다양성 촉진 정책 이행, 인종 차별 방지에 대한 기업 내부 소통, 교육 및 여론 조성 이행, 취업 희망자의 취업 활동 시 차별 방지 원칙 통보, 차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의 이행의 효율성에 기초한다. 현재 90개 기업이 다양성 라벨을 부여받았다.²⁰⁾

3) 사회적 책임 투자

프랑스는 사회적 책임 투자(Investissements socialement responsables)를 “재정 범주 이외에 환경, 사회 및 경영에 관련된 범주를 체계적으로 고려한 일관성 있는 투자 형태”라고 정의한다.²¹⁾

19) <http://www.afnor.org/liste-des-actualites/actualites/2011/mars-2011/label-egalite-professionnelle-femme-homme-48-organismes-labellises-au-benefice-de-840-000-salaries/>.

20) <http://www.fonction-publique.gouv.fr/fonction-publique/carriere-et-parcours-professionnel-37>.

21) L'investissement socialement responsable (ISR), les clés de la banque, Juillet 2010, p. 4.

2001년 사회 책임 투자를 위한 포럼(Forum pou l'investissement)이 설립되었다. 포럼은 프랑스의 사회 책임 투자를 유럽 수준으로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실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금융분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프랑스는 OECD의 다수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회 책임 투자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제정했으며, 퇴직자를 위한 예비 기금 규정과 자의적 급여 예금 파트너 계획을 통해 사회, 환경 및 윤리 측면을 고려한 투자 정책을 유도한다. 퇴직 연금 기금의 경우 사회 책임 투자에 일정액을 투자한다. 또한, 2008년 8월 4일자 경제 근대화에 관한 법률 n°2008-776(LOI n°2008-776 du 4 août 2008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은 모든 예금 정책이 연대 기금을 제안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2009년 그르넬 1 법률 제53조도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사회 책임 투자 촉진을 규정한다.

2010년 프랑스의 사회 책임 투자 총액은 685억 유로에 달하며 매년 35%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Novethic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300개 이상의 투자 회사가 사회 책임 투자 상품을 제안했다.

Ⅲ. 자영업자 보호 및 지원

1. 형태에 따른 분류

프랑스 상법 및 관련법은 25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5,000만 유로 이하의 연 매출액을 달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petites et les moyennes entreprises - PME*)으로 규정하고, 이 중 2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초소형기업(*Très petites entreprises - TPE*), 1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마이크로기업(*Micro entreprise*)으로 구분한다. 자영업(*Auto entreprise*)은 마이크로 기업, 개인 또는 1인기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프랑스 법은 자영업과 유사한 기업 형태를 지닌 개인기업 또는 1인기업으로 개인기업(*Entreprise individuelle*), 유한 1인기업(*Entreprise unipersonnel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 EURL*), 1인 합자기업(*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unipersonnelle - SASU*), 유한 자유영업기업(*Société d'exercice libéral à la responsabilité limitée - SELARL*), 합자 자유영업기업(*Société d'exercice libéral par actions simplifiée*), 마이크로 기업 (*Micro entreprise*), 자유직업(*Profession libérale*), 독립직업(*Profession indépendante*), 독립 근로자(*Travailleur indépendant*), 자영업자(*Auto-entrepreneur*) 등의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기업에 대해 규정한다.

1) 개인기업(Entreprise individuelle)

유한 개인기업에 관한 2010년 6월 15일자 법률 n°2010-658(LOI n°2010-658 du 15 juin 2010 relative à l'entrepreneur individuel à responsabilité limitée)은 기존의 개인기업가의 법적 지위를 개정해 개인기업은 1인의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한다. 개인기업은 상업 및 기업 등록부(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 RCS) 나 직종 총람(Répertoire des métiers) 등록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법이 규정하는 법인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는다. 즉, 개인기업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상기 법에 준거해 추가 삽입된 상법 제526-6조는 모든 개인기업가는 법인 창설이 필요치 않으며, 개인기업가는 본인의 개인 자산과는 별개의 자산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기업에 할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인기업가는 파산의 경우 채권자에게만 법적 책임을 진다. 또한, 개인기업가는 제3자 또는 고객을 위한 직업 책임 보험 가입을 통해 경영 위기 시 발생하는 제3자 또는 고객의 피해 감소를 도모할 수 있다. 2003년부터 공중 및 일반 광고를 통해 채권자가 압류를 이행할 경우, 개인기업가의 기본 주거지는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기 주거지가 압류 대상에 포함되었을 경우 기본 주거지를 차후에 압류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프랑스의 개인기업가는 상법 적용 대상인 일반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제한된 형태의 경제 활동 분야에서 영업하는 마이크로 기업 또는 자영업자 등에만 적용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세법 및 사회 복지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기 세제 및 사회 복지 혜택은 상법 적용 대상인 일반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개인기업가의 파산 시 개인기업가의 자산 보호를 위해 전통 수공업자와 공증인의 강력한 요청에 바탕을 두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개인 유한 제도는 파산 시 개인기업가의 자산 보호를 강화했다. 개인 유한 제도에 준거해 개인기업가는 개인기업의 파산 시 기업가의 개인 자산 보호를 위해 전문 감정인이 공식 감정한 3만 유로 이상의 개인 자산을 기업 자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개인기업가는 기업세 납부 의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장비 및 고용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단일 비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마이크로 기업(Micro entreprise)

경제촉진에 관한 2003년 8월 1일자 법률 n°2003-721(Loi n°2003-721 du 1 août 2003 pour l'initiative économique) 제35조는 마이크로 기업은 상업 또는 비영리 상

업 활동에 종사하며 1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기업가가 경영하는 소규모 기업이라고 정의하며, 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세법 및 특별 사회 보장 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으로 구분한다. 상기 법 제35조에 준거해 세법은 마이크로 기업을 상품 판매 및 구매 영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과세 전 8만 유로 및 수익이 3만 2,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정의하며, 연간 매출액의 29%를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비영리 상업 활동 분야의 마이크로 기업의 경우, 매출액에 관계없이 연 판매액의 66%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마이크로 기업은 독립적인 고용주나 근로자(상인, 수공업자, 자유업)로 구성된 개인기업으로 간주되며 상법이나 기업법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않으며 상기 법이 요구하는 기업 조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마이크로 기업의 창설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치 않으며, 개인기업 창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마이크로 기업의 창설이 인정된다.

마이크로 기업가는 독립근로자로서 영업 분야에 따라 기업 절차 센터(Centre de formalités des entreprises - CFE) 등록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마이크로 기업가는 영업 분야가 상업일 경우에는 상업 및 기업 등록부(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 RCS), 수공업일 경우에는 직종 총람(Répertoire des métiers)에, 독립적인 자유업일 경우 사회 복지 및 가족 수당 납부금 징수 연합(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 URSSAF)에 등록해야 한다.

마이크로 기업은 특정 영업 분야(소상인, 수공업 및 자유직 등)에서 활동하는 개인기업을 위한 특별 세제 및 특별 사회 보장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일반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에서 제외되며, 마이크로 기업 또는 독립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복지 제도에 가입한다. 마이크로 기업은 최소 규모의 회계 장부 작성 의무가 부과되지만, 회계 장부 작성에 필요한 영수증 첨부 의무, 결산 보고서 및 손익 계산서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일일 세부 구매 및 판매 장부 작성 및 구매,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증명 자료 보존 의무 축소의 혜택을 받는다.

마이크로 기업에 대한 과세는 최소 과세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기업의 영업 활동과 연 매출액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영업 활동에 대해 고정 부가 가치세율을 적용받으며, 일반 부가 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 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는 마이크로 기업가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 환불 혜택에서 제외된다. 마이크로 기업인에 대한 소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지만 마이크로 기업인은 직업세 과세 대상이다.

마이크로 기업인은 특별 사회 복지 제도인 비고용 근로자 기금에 가입해 의료 보험, 가족 수당 및 자영업자 사회 복지 제도가 운영하는 퇴직 연금 혜택을 받는다. 2008년 1월 1일부터 소득에 대한 사회 보장 납부액이 매출액의 특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판매액의 14%, 기타 매출액의 24.6%) 비고용 근로자 기금에 가입한 모든 마이크로 기업인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고정 납부 금액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상기 혜택은 마이크로 기업 창설 또는 마이크로 기업 세제의 적용 개시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 근로자를 위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 복지 납부금 지불 의무를 준수한다.

3) 독립근로자(Travailleur indépendant)

독립근로자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자영업자로서 경제 활동을 행사하는 모든 자연인을 의미하며, 상기 활동에 따른 영업 위험을 본인이 부담하며 궁극적인 수익을 소유한다. 근로 시간, 일시 및 근로 방식 등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고용된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고용주에 대한 종속 관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 사회 복지 제도(비근로자 및 비농업인 사회 복지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독립근로자의 노동은 노동법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독립근로자는 사회 복지 및 가족 수당 납부금 징수 연합(URSSAF), 산업 및 상업 고용 협회(Association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 ASSEDI)와 세무 당국에 영업 활동을 등록해야 하며, 신고된 영업 분야에서만 활동해야 한다. 오늘날 프랑스 독립근로자는 통신, 마케팅, 언론, 웹사이트 개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컴퓨터 그래픽, 설계도, 지도 제작, 문헌 조사, 원고 수정 및 교정, 편집, 통·번역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독립근로자는 1인 기업인 개인기업, 유한 1인 기업(EIRL) 및 유한 개인기업(EIRL) 또는 2인 이하의 합작 형태의 유한기업(SARL)으로 창업할 수 있다.

독립근로자는 세금 납부를 위해 마이크로 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또는 단순 세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마이크로 기업 세제를 선택할 경우, 상기 세제 적용 조건인 1인 기업으로서 연 매출 최고액 2만 7,000유로를 준수해야 하며,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판매 상품에 대한 부가 가치세 환불 혜택에서 제외된다. 반면 단순 세제를 선택한 독립근로자는 연간 결산 보고서 및 손익 계산서 작성 의무를 준수하며,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만 부가 가치세 환불 혜택을 받는다.

실업자가 독립근로자로서의 영업을 이행할 경우, 창업 또는 기업 인수 실업자를 위한 보조금(Aide aux Chômeurs Créateurs ou Repreneurs d'Entreprise - ACCRE)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업 개시 후 최소 6개월간 실업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창업 촉진 및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과 특별 세금 감면 혜택과 창업에 관한 전문가의 무료 자문도 가능하다. 근로자가 독립근로자로 영업을 개시할 경우, 연장

이 가능한 1년 기간의 창업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독립근로자로서의 영업 실패의 경우 복직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 사회 복지 납부금 면제 혜택이 가능하다. 장애인 독립근로자는 장애의 성격 및 장애도에 기초한 기술적 지원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자영업자(Auto-entrepreneur)

(1) 법적 지위

상업, 수공업, 중소기업, 관광업 및 서비스업 담당 국무 장관인 에르베 노벨리(Novelli)가 발의해 제정된 2008년 8월 4일자 경제 근대화법률(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은 자영업에 관한 법적 지위를 프랑스 최초로 도입했다(제1장: 개인기업가 지위 창설).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건설과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근대화법률은 상법과 사회 복지 및 가족 수당 납부 징수 연합의 적용 대상에 자영업을 포함시켰다.

프랑스 자영업 제도는 2008년 채택 후 6개월 내에 14만 5,000명의 개인이 자영업 형태의 개인기업 창업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금융 위기 및 경제 불황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공적인 정책으로 간주된다. 2009년 12월 31일 국립 통계 및 경제 연구원(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 Insee)은 2009년에 32만 19명의 자영업자가 자영업 창업을 신고했으며, 상기 법안이 목적했던 10억 유로의 자영업 매출액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노벨리는 파산에 직면한 자영수공업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 유한 책임 기업(Entreprise unipersonnel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자영업 창업 등록 절차를 권장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개시, 중지 및 폐쇄 절차의 단순화를 달성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일반 기업의 창업이 필요치 않은 모든 형태의 영업 분야에서 자영업 활동을 허용한다.

자영업자는 개인기업 및 1인 기업으로 간주된다. 자영업자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영업자는 마이크로 기업 조건인 최대 매출액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즉, 2011년도를 기준으로 상품 판매 매출액은 연간 8만 1,500유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서비스 업종의 자영업자는 3만 2,6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수공업과 같은 특정 직종의 경우 해당 자영업자는 수공업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의무 직업 연수를 수료해야 하며, 건설 분야와 같은 특정 분야의 경우에는 기업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상업 및 기업 등록부 등록 의무가 없으며, 직종 총람 등록 의무도 면제되어 기업 등록 번호도 부여받지 않는다. 또한, 자영업자는 개인기업 범주에 포함되는 1

인 기업으로서 법정 근로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단순화된 소액 세금 및 소액 사회 복지 납부 제도 및 퇴직 연금 수령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영업 활동 휴지기에 자영업자는 사회 보장 혜택에서 제외되며 퇴직 연금을 위한 적립금도 납부할 수 없다. 또한, 실업자로서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창업 및 기업 인수 실업자 지원(ACCRES)도 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매출 제한도 너무 낮은 수준으로 1명 이상의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창업 대상자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취업 신청자, 학생, 퇴직 근로자, 공무원, 자유업 및 독립 직종 종사자이며, 자영업자는 본인의 거주지를 자영업 창업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또한 공공 주택 관리 공단의 허가를 획득한 후 거주하는 공공 임대 주택에서 자영업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자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 농업 부가가치세 적용 분야
- 장비 및 항구적인 소비재 대여와 같은 상업 또는 비상업 분야
- 유럽 연합의 기타 회원국 내에서의 신차 판매
- 부동산 부가 가치세 적용 분야(부동산 판매 및 소개업, 부동산 회사 하청 판매)
- 직업용 부동산 임대 분야
- 공무원 및 공공 분야(공증인)
- 문학, 과학 또는 예체능 분야
- 선물 시장 및 옵션 시장

2011년 말 프랑스 자영업자는 74만 명에 이르며, 2012년도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업, 식당, 언론, 공공 분야, 건설, 상업 또는 교육 분야를 포함하는 모든 분야에서 자영업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영업의 직종 또한 전화 판매원, 상품 판매원, 피자 배달원, 미용사, 목수 등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2) 자영업자 보호조치

자영업자는 특정 매출액 비율에 바탕을 두어 결정된 원천 징수 제도에 따라 사회 복지 납부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상품 판매는 매출액의 12%, 서비스 제공 및 수공업은 21.30%, 자유 직종의 경우는 18.30%에 기초한 상기 원천 징수 사회 복지 납부액이 결정된다. 자영업자가 특정 기간에 매출액이 없을 경우 자영업자의 사회 복지 납부금은 면제된다. 매출이 없을 경우 세금 및 사회 보장금 납부 의무도 면제되며,

소득에 대한 포괄 세율제(상품 판매 및 구매는 13%, 상업 서비스는 23%)와 포괄 부가가치세 적용 혜택을 받는다. 또한, 마이크로 기업의 법적 지위에 준거해 자영업자는 창업 후 3년간 부가가치세 및 지방 경제세인 기업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자영업자는 사회 복지 납부 및 세금 납부 방식을 매월 또는 매 3개월 납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자영업자는 기타 독립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매출액과 경제 활동에 기초해 산출된 직업 교육세를 납부한다. 산출 기준은 상업 분야 연간 매출액의 0.1%, 서비스 제공업과 자유업은 0.2%, 수공업 분야는 0.3%이다.

과세 소득 제한 조건에 따라 자영업자는 과세 소득 미달 시 소득 면제 혜택을 주는 마이크로 세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 징수되는 사회 복지 납부금에 포함되는 독립 근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사회 보장 제도는 자영업자를 위해 진료 수가의 70%, 안과 치료의 65%, 보조 진료(간병, 물리 치료 등) 60%, 의약품 가격의 15%에서 65%, 입원비 80%를 지원한다.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자영업 설명서 발간, 각 지방에 소재하는 직종 및 수공업 회의소와 상공 회의소가 주관하는 정보 설명회 개최, 자영업 창업 희망자의 사업 계획에 대한 무료 평가 제공, 공익 협회(Association reconnue d'utilité publique - ADIE)의 지원, 창업 지원 기구, 상공 회의소 및 직종 및 수공업 회의소를 통한 자영업 창업 지원, 자영업 연합과 자영업 연맹과 같은 지역별 자영업자 단체 조직을 통한 창업 경험 및 영업 정보 공유, 인터넷을 이용한 자영업 경영 위탁 서비스 제공, 자영업자 간의 프랜차이즈 결성이 시행된다.

자영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금융 기관 또한 자영업자를 위한 소액 대출 또는 창업 자금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민간 은행 또는 Business angels와 같은 민간 투자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자영업자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한다.

2. 자영업 지원 및 보호제도

1) 마이크로 크레딧

전통적인 은행 대출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개인, 자영업자 또는 수공업자에게 소액을 대출해 주는 마이크로 크레딧은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경제 불황에 직면해 실업과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 간주된다. 마이크로 크레딧의 효율성을 인식한 프랑스 공권력은 마이크로 크레딧 촉진을 위한 정책 시행에 노력을 기울이지만 국민의 인식 부족과 홍보 부족 및 관련 금융 기관 사

이의 폐쇄된 운영으로 인해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 못 하고 있다. 2010년 7월 1일자 소비 대출 개혁에 관한 법률(Loi du 1er juillet 2010 portant réforme du crédit à la consommation)은 제3장 제23조~제26조에서 마이크로 크레딧에 관해 규정한다. 인터넷망을 이용한 마이크로 크레딧 신청 절차의 개설에 따라 실질적인 일상 생활에 대한 재정 보조를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중이 증가 중이다. 프랑스의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에 참여하는 금융 기관 및 관련 단체는 전통적인 금융 기관의 대출 시스템에서 배제된 마이크로 기업에 대한 대출과 경영 지원을 담당한다. 2010년도 9.7%의 이자율의 최고 한도액 6,000유로의 마이크로 크레딧 1만 2,000건이 시행되었다. 상기 마이크로 크레딧은 94%의 상환율을 보여 주며, 마이크로 크레딧 혜택을 받은 자영업 중 68%가 영업 시작 2년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월 15일 경제부 장관인 크리스띠느 라가르드(Lagarde)는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조치로 마이크로 크레딧의 용이한 자금 조달(인터넷을 통한 마이크로 크레딧 신청), 공공 조치의 효율성 강화(보증 기금의 최적 운용), 마이크로 크레딧 담당 금융 기관에 대한 대국민 연례 홍보 및 프랑스 마이크로 크레딧 활동을 위한 국립 정보 통계 위원회의 표준 통계 보고서 공표를 발표했다.

프랑스 마이크로 크레딧은 개인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édit personnel)과 창업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édit professionnel)의 2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마이크로 크레딧 담당 기관은 마이크로 크레딧, 정부 지원금, 외국 투자자의 투자 보증에 필요한 시장 개방과 외부와의 의견 교환을 지원한다.²²⁾

(1) 개인 마이크로 크레딧

개인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은 보를루 법률(Loi Borloo)에 준거해 국가가 관리하며, 전통적인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자연인에게 허용되는 은행 대출의 형태를 지닌다. 국가가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은 경제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개인의 경제 계획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마이크로 크레딧은 상환 능력을 지녔지만 전통적인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고 경제 또는 사회 활동 참여 계획을 제출한 개인(최저 소득 수당 대상자, 취업 지원자, 비정규직으로 임시직 고용자, 부정기적인 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마이크로 크레딧 대출을 신청하는 개인은 신청자의 활동 계획과 운영 상황을 평가하는 후견인을 동반해야 한다. 반면,

22) The Regulation of Microcredit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April 2007, pp. 8-19 & p. 41.

마이크로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에 대한 개인 마이크로 크레딧은 제외된다.

개인에 대한 마이크로 크레딧 시스템에 가입한 평가 기관은 대출 신청 개인의 사업 계획을 평가하고 원활한 경영을 보장하는 평가 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평가 방식은 각 대출 신청의 내용과 대출 허가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마이크로 크레딧 결정 관련 기관은 대출 신청자, 신청 사업 계획 내용, 사업 예산 분석, 관련 공법의 지원 규정 분석, 대출 지원 정보, 신청자의 법적 지위 증명 서류 작성, 대출 혜택자의 상환 기간 동안의 지원 및 관찰 임무를 담당한다.

개인 마이크로 크레딧 시스템 가입 은행은 평가 기관이 제출한 신청 서류 검사, 대출 가부 결정 임무를 담당한다. 대출이 결정된 경우 대출 혜택자는 대출 계약에 서명하며, 상환 기간 동안 상기 대출은 대출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대출은 갹신이 불가능하며, 고정 대출 이율과 월 상환액이 결정되어 허용된다. 개인 마이크로 크레딧이 지원하는 사업 계획은 고용, 직업 교육, 산업 연수, 주택 임대차 및 건강 등에 관련된 투자 등 대출 수혜자의 개인적인 경제 및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모든 사업 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부채 상환(채권 상환, 주택 월세 지불, 은행 적자 등), 납세 또는 마이크로 기업 창업을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한 대출은 제외된다. 마이크로 크레딧의 대출액은 고정 이율을 조건으로 3,000유로로 제한되며 36개월 이하의 기간에 매월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액이 해당 개인의 일상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 마이크로 크레딧은 개인을 위한 대출이며 갹신이 불가능하다.

(2) 창업 마이크로 크레딧

프랑스 일반 금융 감독원은 창업 마이크로 크레딧을 자금 조달 또는 3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기업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의무적인 사업 평가 및 지원 장치를 동반하는 2만 5,000유로 이하의 1회성 대출 시스템이라고 정의한다. 창업 마이크로 크레딧은 창업 또는 기업 인수를 원하는 개인에게 2만 5,000유로 이하의 대부를 제공한다. 마이크로 크레딧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기업가는 France Active, Babyloan, ADIE, France Initiative, BGE Boutiques de Gestion Fondation de la 2e Chance 등의 지원 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상기 기관은 창업 또는 기업 인수를 원하는 개인에게 재정 및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작성을 지원한다.

창업 마이크로 크레딧은 은행 또는 마이크로 크레딧 시민 단체를 통한 2가지 형태를 지닌다. 은행의 마이크로 크레딧은 2만 5,000유로 이하로 제한되며, 마이크로 크레딧 시민 단체의 대출은 최저 소득 지원금 수령자인 실업자와 3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 기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1만 유로로 제한한다. 공익을 위한 시민

단체인 Adie(Association reconnue d'utilité publique)와 같은 마이크로 크레딧 시민 단체는 자영업 창업 또는 자영 기업 인수를 원하지만 전통적인 은행 대출 시스템에서 배제된 최저 소득 수당자(RMI, RSA, ASS 등), 실업자, 해고 근로자 또는 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을 지원한다. 창업 마이크로 크레딧의 대출 기간은 6개월부터 12개월이다. 대출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창업 및 기업 인수 계획을 필요한 재정 내용, 사업 계획, 재정 계획 및 예상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상기 내용이 신청자의 경제 상황에 적합한지에 관한 평가 기관의 사정을 거쳐야 한다.

창업 마이크로 크레딧은 시민단체인 France Active를 통해 사회연대기금(Fonds de cohésion sociale)이 보장한다. 상기 기금은 예금금고(Caisse des Dépôts)가 관리한다. 사회 연대 기금으로부터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 허가를 획득한 은행 및 시민 단체는 상환 불능 상태가 발생한 대출금에 대해 기금으로부터 상기 대출금액의 50%까지 상환을 보장받는다.

2010년 창업 마이크로 크레딧은 대출 금액 평균 3,000유로로 5만 6,000건의 자영업 창업 또는 자영 기업 인수 결과를 이끌어 냈다. Adie는 현재 8,000유로 이하의 자본금이 요구되는 창업 마이크로 크레딧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가 13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한다.²³⁾

2) 대형유통업체 영업 제한

프랑스는 매장 규모가 2,500m²를 초과하는 유통업체를 대형 유통 업체(Hyper-marché 또는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로 규정하며, 대형 유통 업체의 시장 점유 및 시장 확장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형 슈퍼마켓으로는 Auchan, Carrefour, Cora, E.Leclerc 및 Géant Casino 등이 대형 유통업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 할인 유통 업체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시장 질서 보호와 생필품의 가격 인상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가격 통제 생필품 목록을 작성해 정부가 상인을 대신해 생필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했다. 1997년 갈랑(Galland)법률은 제조업자가 대형 유통 업자에게 지불하는 판매 촉진비와 같은 리베이트 금지와 유통 업자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단일 가격 공표

23) VALENTIN P, MOSQUERA-YON T., MASSON C., Le Microcrédit, Conseil national de l'information statistique, Septembre 2011, pp. 46-58.

의무를 부과했으며, 2006년 자뮈-뒤트레이(Jacob-Dutreil)법률은 갈랑드 법이 규정한 최대 가격 제한제를 개정한 법정 최저 가격제를 도입했다. 법정 최저 가격제 도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소비자 가격을 적용하게 된 대형 유통 업체는 동일 제품의 경우 다수의 제조업체 제품 구매와 수입품 판매를 통한 가격 인상을 시도했다. 이후 2008년 샤텔(Chatel)법률과 경제 근대화법률 제정을 통해 유통 업체의 투명 판매 가격제와 제조업체와 유통 업체 간의 구매가격 협상제를 설립하여 유통 업체의 수익 증가를 통제하고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을 도모한다.

프랑스는 또한 대형 유통 업체의 매장 규모에 따른 사전 허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엄격한 공정 거래 규제를 시행해 자영업자가 포함된 중소 상인의 상권을 보호한다. 1969년 설립된 상업 지역 지방 위원회와 상업 지역 국립 위원회는 대형 유통 업체가 면적이 3,000m²를 초과하는 신규 매장을 개설할 경우, 매장 개설 조건인 건축 허가에 대한 사전 심사 절차를 시행해 대형 유통 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확장을 억제한다. 1971년 12월 27일자 상업 및 수공업 기본법률(Loi n° 73-1193 du 27 décembre 1973 d'orientation du commerce et de l'artisanat)은 상기 감독 요건을 강화해 1,000m²를 초과하는 대형 유통 업체의 매장 개장의 경우에도 건축 허가 사전 심사제를 적용했으며, 1996년 7월 5일자 상업 및 수공업 발전 및 촉진에 관한 법률(Loi n°96-603 du 5 juillet 1996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promotion du commerce et de l'artisanat)은 건축 허가 심사 대상인 대형 유통 업체의 매장 규모를 300m²까지 축소하고, 심사 담당 기관에 상업 시설 지방 위원회와 상업 시설 국립 위원회 등을 추가함으로써 강화된 심사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대형 유통 업체의 시장 점유 확산을 통제했다.

3) 경제현대화법

2008년 8월 4일 경제현대화에 관한 법률은 우선 모든 경제 활동 종사자 간에 적용되었던 기존 60일의 지불 유예 기간을 45일로 축소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법 및 민법상의 징벌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업과 하청 기업, 기업과 자영업자 간의 장기 간의 지불 유예에 따른 영업 손실의 축소를 도모한다. 한편 1,000m²를 초과하는 대형 유통 업체 매장의 개장 시 상업 활동 사전 심사제 적용 면제를 규정해 최소 300m² 매장에 대한 상업 활동 사전 심사제를 폐지한다. 2만 3,000유로 이하의 영업 권리금 양도 시 과세 면제 및 영업 권리금 양도 시 과세율을 3%로 인하한다. 자영업자 지원 지침을 발간해 민간 및 공공 분야의 모든 근로자가 기존 근로 활동 이외의 자영업 창업에 필요한 지원 및 단순 행정 및 세제 절차 적용한다. 또한, 소상공

인 및 수공업자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던 상업 및 수공업 지원 세제(Taxe d'aide au commerce et à l'artisanat - Taca)를 개정해 m²당 매출액이 3,000유로 이상인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 업체와 대형 쇼핑 센터에 400m² 이하의 매장을 소유하는 상인에게 상업 매장세(Taxe sur les surfaces commerciales - Tascom)를 과세함으로써 상기 세금 징수를 통한 중·소상인과 수공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상업 매장세는 기존의 상업 및 수공업 지원세를 대체하며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징수된 세금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상업 매장세의 과세 기준은 m²당 매출액이 아닌 세전 연 매출액이 46만 유로를 초과하는 세전 연 매출액과 400m² 이상의 매장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지역 단위로 소규모 슈퍼마켓 체인을 개장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장을 위협하는 대형 유통 업체의 동네 시장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의 1,000m² 이하의 매장 개장을 자유화함으로써 대형 유통 업체에 대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가격 결정의 경우, 제조업체와 대형 유통 업체 간의 가격 협상제를 내용으로 하는 강화된 공정 거래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대형 유통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저가 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고 자영업자의 영업 이익을 보장한다.

3. 현황

2008년 자영업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2009년 창업 기업의 절반인 32만 개의 기업이 자영업이라는 사실은 자영업 제도의 성공으로 간주되었고,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경제 불황에 직면한 자본주의 위기 해소, 경제 성장, 생산비 절감, 노동 규제 완화를 통한 고용 감소와 대량 해고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창업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되었다. 국립 통계 및 경제 연구원은 2012년 자영업자의 수는 100만 명을 넘으며 그 중 반 이상이 실업자에 의한 자영업 창업이라고 예상한다. 인터넷을 통한 한번의 클릭으로 가능한 자영업 창업은 텔레 마케팅, 통신 판매, 컴퓨터 디자인, 피자 배달, 미용, 목수, 농업, 정보 통신, 식당, 언론 및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자영업자를 양산했으며, 기업의 경우에도 기존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전환해 고용 관계를 지속하면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감소된 사회 보장 부담금 혜택과 해고 보상이 필요치 않은 간단한 해고 절차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자영업 제도로 인해 근로 소득자가 기업에 대한 근로 규제가 완화된 시장으로 진입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다수의 자영업자를 기업의 하청 업자 또는 기존의 고용 근로자를 대체하는 역할로 전환시켰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창업 자

유화 또는 고용 근로자의 소득 증진을 통한 고용 근로자의 종속적 경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시장 경쟁 체제의 냉혹한 현실을 맞닥트린 자영업자는 소득 증가보다는 개인 자산 감소라는 결과에 직면하기도 한다. 특정 기업의 경우, 경영 활동과 생산성 증가 및 기업의 사회 보장 부담금을 절약하기 위해 노동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방식으로 신규 근로자 고용보다는 기존의 고용 근로자에게 자영업자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게 한 후, 상기 자영업자를 하청업체로 위장해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해고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대체하는 현상이 고용 시장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고용 근로자, 비정규직 교사 또는 비정규직 기자 또한 자영업자 법적 지위를 통해 절감된 기업 또는 교육 기관의 비용을 소득에 첨부하고 낮은 사회 보장 부담금 혜택을 이용해 원천 징수되는 사회 보장 납부금과 소득세의 절약을 도모한다. 기존의 수공업자들은 더 낮은 사회 보장 납부금 혜택을 누리는 자영업자와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 활동 및 소득 유지를 위해 특정 기업이나 단일 고객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법정 근로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과도한 근로 시간과 새로운 고객 창출 불가능으로 인한 불안정한 소득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소득 기준에 기초해 결정되는 퇴직 연금이나 가족 수당 혜택의 경우, 최고 매출액 제한의 규제로 인해 신고되지 않는 초과 소득에 대한 연금 및 수당 수령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전문 기술 및 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에 해당 조건을 결여한 자영업자의 대량 진출로 인한 낮은 수준의 작업 결과가 나타나며, 고급 식당의 경우 자영업자 자격을 취득한 불법 외국 노동자가 주방 보조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프랑스 사회학자인 이렌느 페레이라(Pereira)는 자영업 제도는 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 평등한 경쟁 조건을 표명하지만 자본주의 측면에서는 불평등한 고용 관계를 강요할 뿐이며, 프랑스의 자영업자는 자기 착취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하청 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프랑스 노조 또한 자영업자의 노동 노예화 현상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자영업 제도의 왜곡과 상기 비판에 대해 자영업자 연맹(Fédération des auto-entrepreneurs - FEDAE)은 노동법 규제를 회피한 위장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2 내지 3%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연맹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 직업 윤리 준수 현장에 서명해 위장 자영업자 확산을 방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2012년 1월 18일 자영업자 연맹은 자영업 백서를 발간해 2012년 5월의 대선 후보자에게 자영업 보호, 자영업 성장 촉진과 자영업 제도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

은 12가지 안을 제안하였다.

- 과세 매출액과 과세 계수 제한액을 각각 4만 유로와 10만 유로로 인상
- 공무원의 자영업 제한 해제
- 직업 군인 및 헌병의 자영업 창업 확대
- 농업 분야 자영업 개방
- 매출액의 1.8%로 고정된 기업 사회 복지 납부금 개정
- 자영업 직업 교육 기금 창설
- 직업 교육 기금이 지원하는 자영업 활동 진단을 통한 영업 성장 시스템 도입
- 민간 계약 체결을 통한 자영업 단체 촉진
- 빈곤층 지역 청소년의 자영업 창업 촉진
- 후결 현장 및 직업 의무법을 통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자영업 후견제 설립
- 세금 및 사회 복지 납부금의 실질적인 단순화
- 유럽 연합 차원에서 적용되는 자영업자 창업에 관한 공동 규정 제정

IV. 결론

프랑스의 경제민주화는 인간의 인간다움을 중요시하는 사회연대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연대경제는 기업의 자본, 수익 또는 경영 실적보다는 기업활동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근로자 및 개인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즉, 19세기에 발생한 이상적 사회주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경제하에 방만하게 확장되어 온 기업권력에 대한 시민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국내 및 국제 규모의 규범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기 사회연대경제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적 발전, 고용 증대, 환경 보호 및 에코시스템 보존에 근거를 둔 환경경제 발전, 사회 복지, 기업 규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사회소외계층의 경제 활동 참여, 기업의 협동조합화를 통한 근로자의 경영 참여, 수익분배 및 부의 사회 환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을 분배하는 사회복지 제도 등에서 상기 구체화의 예를 찾을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프랑스는 기업의 환경 및 사회기여에 중점을 두며, 경영 투명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감독 기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에 따른 라벨부여를 수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한다.

자영업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프랑스는 각 산업분야별 자영업자를 분류하고 자영업자가 진출한 산업분야 보호에 주력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를 유도한다. 자영업자 보호는 대기업의 지역 상권 진출을 제한하고 지역 상인의 일정 규모의 매장 설치를 인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한다.

프랑스의 청년 고용 촉진 정책은 직업 교육 강화와 취업기회 부여 및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압축된다. 1970년대부터 좌, 우파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 이행했지만 획기적인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결국 청년 고용 또한 경제상황에 따른 증감 현상을 보여 준다. 2012년 구성된 올랑드 사회당 정부는 청년층 고용 촉진을 위해 기존의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덧붙여, 세대 간 고용 협력 계약(청년 근로자와 숙련 근로자 간의 후원 계약을 통한 직업 안정성 도모, 후원 계약을 체결한 청년 근로자의 근무 숙달과 숙련 근로자의 정년 퇴직 보장), 15만 명의 청년 고용 창출, 빈곤층, 무학력 및 실업 청년에 대한 기업의 고용 의무 부과, 사회 단체 및 기업과의 고용 협력 강화, 국립 직업 알선 센터의 역할 강화, 대량 해고 노동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기업의 경영 이익 또는 주식 배당 촉구 등의 청년층 실업 해소와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참고문헌

문헌

- FRAISSE Laurent, "Économie solidaire et démocratisation de l'économie", HERMÈS 36, 2003.
- MANOURY Lucile, Economie sociale et solidaire : un moteur de l'action sur les territoires de la politique de la ville ?, 2 juillet 2004.
- LAVILLE J.-L., Une troisième voie pour le travail, 1999, Paris, Éditions Desclée de Brouwer.
- ROUSTANG, G., LAVILLE, J.-L., EME, B., MOTHÉ, D., PERRET, B., Vers un nouveau contrat social, Sociologie économique, Paris, Desclée de Brouwer.
- TOURMENTE David, Les Unités de soins de longue durée : du sanitaire au médico-social, ENSP, 2006.
- VALENTIN P., MOSQUERA-YON T., MASSON C., Le Microcrédit, Conseil national de l'information statistique, Septembre 2011.
- CNCREs, Panorama de l'ESS en France et dans les régions".
- Grenelle de l'Environnement, Ministre de l'Ecologie, de l'Ener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Rapport final, 21 mars 2008.

- *L'investissement socialement responsable (ISR)*, les clés de la banque, Juillet 2010.
- Rapport du collège des chercheuses et chercheurs, Rapport final présenté aux Premiers ministres, Coopération France-Québec en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 The Regulation of Microcredit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April 2007.
- Le chômage des jeunes : quel diagnostic ?,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Septembre 2011.
- Documents d'études-Emploi des jeunes, DARES, Novembre 2011.
- L'insertion des jeunes, Formation et emploi, 2011.
- European Experiences with Long-Term Care, AARP, 2006.
- Les personnes âgées entre aide à domicile et établissement, Solidarité et santé, DREES, 2003.
- La vie en é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âgées du point de vue des résidents et de leurs proches, Solidarité et santé, DREES, 2011.
- *L'investissement socialement responsable (ISR)*, les clés de la banque, Juillet 2010.

웹사이트

- <http://www.economie.gouv.fr/economie-sociale-et-solidaire-de-quoi-parle-t-on>.
-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Responsabilite-societale-des.html>.
- <http://www.afnor.org/content/view/full/12036>.
- <http://www.fibrecitoyenne.org/>.
- <http://www.legrenelle-environnement.fr/Presentation-du-Grenelle.html>.
- <http://www.social-sante.gouv.fr/espaces,770/handicap,775/dossiers,806/insertion-professionnelle-des,1650/la-charte-de-l-insertion,10850.html>.
- <http://www.afd.fr/home>.
- <http://www.coface.com/>.
- <http://www2.ademe.fr/servlet/getDoc?id=11433&m=3&cid=96>.
- <http://investissement-avenir.gouvernement.fr/>.
- <http://competitivite.gouv.fr/>.
- <http://www.agence-nationale-recherche.fr/>.
-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Mission-et-organisation-du-Comite.html>.
- <http://www.ci-es.fr/>.
- <http://www.vigeo.com/csr-rating-agency/fr/vigeo-rating>.
- <http://www.afnor.org/liste-des-actualites/actualites/2011/mars-2011/label-egalite-professionnelle-femme-homme-48-organismes-labellises-au-benefice-de-840-000-salaries/>.
- <http://www.fonction-publique.gouv.fr/fonction-publique/carriere-et-parcours-professionnel-37>.
- <http://www.imsentreprendre.com/page/ims-entreprendre-pour-la-cite>.
- <http://www.epe-asso.org/>.
- http://www.orse.org/presentation_de_l_orse-33.html.
- <http://www.lexisnexis.fr/pdf/DO/mixite.pdf>.
- http://www2.afnor.org/espace_normalisation/structure.aspx?commid=57804.
- <http://www.afnor.org/profils/centre-d-interet/rse-iso-26000/la-norme-iso-26000-en-quelques-mots/#p18145>.